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금융투자회사 의 영업 및 업 무에 관한 규 정 시행세칙 변경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~ 9. (생략) 10. S클래스 수익증권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</u>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11. ~ 14. (생략) 15. S-P클래스 수익증권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</u>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S클래스 수익증권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(S-T 및 S-P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</u>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1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S-P클래스 수익증권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(S-T 및 S-P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</u>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<u>다른 클래스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</u>

	16. ~ 17. (생 략) ④ (생 략)	<u>있는 클래스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</u>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6. ~ 17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/u>